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서(검재정선미술관)

위탁사무명	검재정선미술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		
소관부서	○ 국 명: 행정관리국	부서장	성명: 주미정 전화번호: 02-2600-6067
	○ 부서명: 문화체육과	팀 장	성명: 김지영 전화번호: 02-2600-6606
	○ 팀 명: 문화시설팀	담당자	성명: 임도균 전화번호: 02-2600-6154
시설/ 사무개요	시 설 명	검재정선미술관	
	소 재 지	강서구 양천로47길 36	
	시설규모	부지 4,065m ² . 연면적 3,305m ² . 지상3층	
	주요시설	기획전시실 I, 기획전시실 II, 검재정선기념실, 다목적실 등	
사업목적 및 위탁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- 다양한 전시·교육·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향유의 공간이자 주민 들의 정신적 쉼터 공간 역할을 하고자 함 ○ 위탁사무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물(건축물, 전시물, 부대시설 등) 유지·관리 - 미술관 고유사업(유물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등) 운영 - 기타 수익사업 및 상호 협의 하에 정하는 사업 		
민간위탁 예정기간	○ 5년(2022. 12. 1.~2027. 11. 30.)		
수탁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개모집 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(운영의 위탁) 		

사전
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
 - 추진근거
 -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 -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운영의 위탁)
 - 검토내역

검토 기준	검토 내용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- 대행, 용역, 보조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 -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- 법적근거: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운영의 위탁)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우리구가 설치한 문화시설로서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바, 공공성과 안전성의 필요성이 높음
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지식·기술 활용 가능성	-시설 운영을 위한 직접 고용의 경우 임금 및 처우개선, 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음 -위탁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, 전문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-수탁기관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선정 가능
성과측정의 용이성	-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(종합성과평가) -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 측정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-지도점검 근거: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 -점검주기: 연 1회 이상 점검 -점검내용: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목표 달성도 점검 -점검에 따른 조치: 위반사항 적발 시, 경고·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
민간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- 검재정선미술관 수탁자 신청 자격기준 ·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-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, 공신력·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위탁 예정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전 타당성 검토</p>	<p>○ 공익성(공공성)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권장되는 시설로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 볼 수 없음 - 문화시설은 국민의 문화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이 적정 <p>※ 사업 중복성 검토: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 사항 없음</p>
---	--